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인사말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한국은 일제 강점기에 정립된 위안부제도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고도 해방이후, 전쟁 시 동원되는 병사들의 성적 위안을 위하여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여성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사실에 대해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숨겨왔던 한국 내 군 위안부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에 가입하였고,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위안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평화유지 운운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포주들과 클럽업주들을 앞세워 기지촌을 조성 및 관리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러한 미군 위안부제도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개입하였던 미군 위안부제도를 인정하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 원고들은 정부에 의해 1957년부터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첫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둘째,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셋째, 국가가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현재 2015년 10월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소송의 쟁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소송의 의미를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김정애, 우순덕, 유영임
 새움터 대표 신영숙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

오늘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새움터, 저와 함께 후원으로 참여하신 여성단체연합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으신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대표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이나영 교수, 조숙현 변호사, 배수명 교수와 토론을 맡으신 신영숙 새움터 대표,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표, 피해자 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 전합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 새누리당 간사를 설득하여 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 위로 끌어올렸던 때가 어제 같은데, 바로 며칠전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전반기 간사이자, 하반기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내내 미군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국민을,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우리 사회 약자인 여성,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19대에 했던 의정활동 중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에 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과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소를 국가 개입하여 만들었듯, 미군 위안부 역시 우리 정부가 외화벌이의 목적, 외교적 관계의 목적 등으로 직접 개입하고 관리했던 증거들을 국가기록, 사료, 당시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올 6월 2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22분이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국가가 자행한 군대 성폭력의 한 사례인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구소송을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피해자 여러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깊고 역사적 진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순서

사 회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격려사	유승희 국회의원
주제발표 1	한국 내 '위안부' 역사 (중앙대학교 이나영교수)
주제발표 2	소송의 경과 및 현재 쟁점을 중심으로 (조숙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장)
주제발표 3	국가폭력 피해자인 미군 위안부들의 신체적 질환 - 기지촌 여성의 국가검진 기초분석 결과 - 보고(강릉원주대학교 배수명교수)
토 론 1	생존한 미군 위안부들의 현실과 과제 (신영숙 새움터 대표)
토 론 2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김정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토 론 3	미군 위안부들에게 소송의 의미 (당사자 1인)

목 차

인사말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3
격려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4
토론회 순서	6
주제문1 - 한국의 '위안부': 뒤얽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	9
주제문2 -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31
토론문1 -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45
토론문2 -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61
부록 - 보도자료	65



주제 발표 1



한국의 '위안부': 뒤엎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 서론

2014년 6월 25일, 한국의 미군기지(US camp towns)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¹⁾ 이들은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여성 122명으로 이루어진 원고인단은 당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 위안부 정책’이었다”며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화벌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 법에도 불법이던 성매매를 기지촌 내에서 용인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까지 묵인했던 사실도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4년 6월 25일). 이때 원고들은 195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을 일컬으며, 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성매매를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 대한민국을 지칭한다(출처: 2014년 6월, 국가배상 소송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배상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담론과 공명한다. 제도에 대한 조성, 관리, 조장,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략과 거울쌍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위안부’라는 용어로 소장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으며 변화되어 왔는가? 이들의 경험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들과 유사한가? 제도로서 ‘미군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소와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군 ‘위안부’는 어떤 의미였을까?

1) 이들은 통상,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라 불리며,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미군 ‘위안부,’ 기지촌 성매매여성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951년 보건부방역국의 한 문서에 적시되어 있듯,²⁾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외군(外軍)을 상대로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를 의미했다. 이 글에서 ‘위안부’는 군인을 위한 성적 위안을 목적으로 동원된 여성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때 ‘동원’이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강요된, 혹은 개별적 선택의 형식을 떠나 상황적 맥락으로 볼 때 강제적 과정을 내포한 구인방식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주로 폭력, 사기, 인신매매가 동반되나 필수조건은 아니다. 이는 동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 및 방식 또한 집단적이고 체계적이었음을 함의한다. 실제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 동원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들을 성적으로 위무했던 여성들, 한국전쟁기 한국군과 유엔군 ‘위안소’에 동원된 여성들 모두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위안부’라 불렸다(이임하, 김귀옥, 박정미, 이나영, 김현선).³⁾

특정 집단의 성적위안을 위한 여성동원에 군과 관이 개입해 온 역사 및 개입의 구체적 행정 구조는 여러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개입의 역사적 구체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고 고마운 심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과 관련하여는 피해자의 증언 및 발굴된 문서를 바탕으로 위안소 제도 성립,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이에 대한 군, 관의 개입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정진성, 양현아, 후지메 유끼, 한승순, 후지나가 다케시, 윤명숙, 강정숙 등). 특히 한혜인(2013)은 소위 위안부 징집업자 혹은 민간업자로 불리는 인사소개업자에 관한 법적 구조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군, 관 개입에 대한 구체적 행정적 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이는 은폐되어 왔지만 조직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위안부’ 강제동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주장의 한 축—‘한국의 민간업자들이 위안부 불법 모집과 동원의 주책임자이고, 일본군은 위안부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책임이 없다’—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 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 참고(보건부방역국 예규 제1726호, 1951.10; 박정미, 2011).

3) 흔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보듯, 법적으로 이해되는 강제성이란 “연행시의 폭력적 납치·사기에 의한 유인, 위안소에 감금·학대·위안부를 강요당한 것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필자는 여성들의 경험을 보다 적절히 드러내기 위해, 맥락성을 중시하는 광의의 강제성 개념을 선호한다. 이는 물리적 폭력에 의한 것만 강제동원으로 이해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정대협 등이 주장해 온 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행되었으며 강제적 통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 전체가 강제연행”이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2001: 17-18).

Moon(1997), Lee(2006), 박정미(2011)는 미군기지촌의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미군과 한국 정부의 체계적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음을 조망했다. 캐더린 문(Moon)의 경우, 비록 박정희 유신정권을 중심으로 한 미군 기지촌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는 있으나 한국의 기지촌 이슈를 최초로 학술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큰 영향을 받은 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제시기 공창제도에서 미군 기지촌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내 성매매 문제의 뿌리를 찾고, 공창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 기생관광, 국내 성매매와 외국인 성매매, 미군 기지촌 성매매를 역사적 연속선 속에서 보되 각각의 개별적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일제 공창제도의 근간이 해방 후 미군정의 대외적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규제 및 관리(regulation and control) 정책에 의해 지속된 측면을 밝힘으로써 미군 기지촌의 역사적 형성 배경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공식적 금지주의와 비공식적 규제주의가 역동적으로 얽혀 있는 한국의 성매매체제의 모순적 뿌리가 결국 일제시기와 미군정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박정미(2011)는 이러한 주장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성매매 정책의 역사 속에 기지촌 성매매를 위치시키고, 행정적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 온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수많은 사료를 발굴해 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의미화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이임하(2004)와 김귀옥(2012)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 위안소가 실제 존재했음을 밝히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김귀옥은 2014년, 최근 논문에서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서 한국군 위안소 문제를 조망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군 위안소’ 문제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거나 희석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재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역사학자인 이임하는 주로 한국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수많은 사료들을 토대로 그간 비가시화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역사의 전면에서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1945년에서 1959년까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미군 ‘위안부’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위안부’ 제도의 보편성과 시기별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위안부’가 특정한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일과 암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변수를 거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식민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뿌리 위에,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성의 대상화라는 문화적 의식과 실천 행위, 군사주의, 발전주의, 자본주의와 지구화가 비/동시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변화·발전해 온 한국의 성매매체제 안에서, 기지촌 성매매는 특수성을 지나

다른 성매매 제도와 공통점 또한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 시기를 제한한 이유는 첫째,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기지촌 활성화 과정과 기지촌 정화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언급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고, 둘째, 초창기 미군 '위안소'가 구축되었던 배경과 과정을 살펴야만 식민지 유제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정시기에서부터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 포스트/식민과 미군 '위안부' 형성:

미군정시기를 중심으로⁴⁾

1945년은 식민의 종식과 새로운 식민화가 만나는 시기였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새로운 제국의 병사들을 필요로 했다. 9월 8일, 하지 장군의 지휘 하에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적지"에 도착한 미군에게 이제 막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멀고도 낯선, 그래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신비로운 동양이었으며, 적국이었기에 위험하고 위생관념이 낮았기에 불결하기까지 한 공간이었다. 서구식 근대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유래한 시간의 선형성과 이에 따른 공간의 배치 방식-발달된 근대적 공간, 서구와 후진적이며 전근대적 공간, 동양-은 미군에게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전근대성'이 '이국성'과 모순적으로 얽힌다는 점이다. 미군 병사들은 "불결하되" "이국적인" 한반도 처녀들에 대한 "성적 탐험"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실질적인 국가 부재 상태의 한반도 사람들은 이에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군의 공식/비공식적 정책에 의해 지지되었다. 미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본토의 성매매 금지정책과 미국방성의 공식적인 입장인 '성매매 억제정책'을 따르는 듯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주둔 지역에서 외국 여성들과의 성적 관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병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가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큰 문제는 병사들의 성욕을 인정하고 성매매를 "위락"으로 보되, 성매매를 관리하고 성병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치와 시간이 필요했다. 먼저 미군정은 미군의무대를 활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감독**을 시도했다. 1945년 9월 11일, 한반도 도착 사흘 만에 미군정은 서울에 **군의무대(Office of corps surgeon)**를 개소하고 잇달아 성병진료소를 개설하였으며, 병원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군의무대의 통제 아래, 의료 검사관들은 술집과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으며, 유곽 지역과 기타 업소를 면밀히 조사했다(Lee, 2006). 또한 미군 의무장

4) 원 자료는 주로 Lee, Na-Young(2006)와 이나영(2007a)을 참고함.

교는 당시 미군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집창지역에 매주 방문하여 성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다(이임하, 2004b: 285). 그들의 권고에 따라, 이후 예방 시설이 계획되었고 성매매에 대한 최초의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게 된다(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63, 497).

둘째, 법률안 마련과 정책 기구를 설치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4일 미군정령 제1호(Ordinance No.1)-'위생국설치에 관한 건'-를 발표하여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한의 "위생수준"을 관리하여 성병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Public Health Problems of South Korea 1950, 9-12). 1945년 10월 27일, 발효된 미군정법령 제18호(Ordinance No. 18)의 의해 위생국은 복지 기능이 부가된 **보건후생국(Bureau of Public Health and Welfare)**으로 바뀌었으며, 곧 이어(1945년 11월 7일) 법령 제25호(Ordinance No. 25)에 의해 각 도에 보건후생과(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가 설립되고 **책임자로 미군의관이** 임명되게 된다. 다음해 1946년 3월 29일,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확장한 후, 같은 해 10월 23일 미군정법령 제114호(Ordinance No. 114)에 따라 각 지역의 보건후생과(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를 보건후생국(Bureau of Public Health and Welfare)으로 바꾸게 된다(Public Health Problems of South Korea 1950: 12-13). 이에 15국 47과의 광범위한 광역 보건행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어 **전국 규모의 보건사업** 실시의 발판이 된다. 1947년 5월에는 **보건후생부 산하에 성병 통제과(Section)**를 설립하여 마침내 성병관리의 대외적 명분을 마련하였다.

셋째, 성병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했다. 부대 지휘관, 군목(軍牧), 특별업무사단(special service division: 오락이나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제공), 헌병사령관, 의무부 등이 관여하여 "**성병통제 위원회(VD Control Councils)**"가 설립되었다. 성병통제 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열고 각 부대단위별로 보고를 통해 성병감염 추이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성매매 관련대책을 제시하곤 했다. 사실상 이들의 권고에 따라 특정 지역과 업소에 병사들의 출입금지과 허가가 결정되기도 했다. 성병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병사들의 "금욕"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병감염을 막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성병 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1/31/1947, WDAO-C 726.1), 사병들의 성적활동을 감시하고 성병을 통제하기 위해 사병 서비스 클럽들의 위치를 지정하기도 했다(5/11/1948, Headquarters XXIV Corps, APO 235).

넷째, 이상과 같은 정책적 시스템의 확보에 따라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모든 여성들은 성병 검사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이국적 성적 탐험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병사들의 개별 건강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불결하고 위험한 존재’로 재탄생된다. 최초의 대규모 검진은 1946년 3월 명월관, 국일관 등에서 일하는 서울시내 4대 권번 기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혈검사였다고 한다(조선일보, 5월 7일; 이임하, 2004b: 284). 이후 군정청 지시로 보건후생부가 주도하여 서울 시내 각 권번 기생들에 대하여 성병 검진이 실시되었고(동아일보, 1946년 7월 24일), 1947년이 되자 미군정은 아예 노골적으로 “시민의 보건후생을 기하”고 “화류병근절책”이라는 명분을 들어, 공창은 물론 여급, 사창들까지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교부하여 성매매를 통제하고자 하였다(조선일보, 1947년 4월 12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같은 해 5월에 설치된 보건후생부 산하에 성병 통제과(Section)는 일제에 의해 시행된 성병 통제 프로그램의 이용 이외에도 질 검사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생(창기), 여급, 댄서, 접객부, 웨이트리스 등 모든 “접객업자(entertainers)”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처치의 대상이 되었고, 건강증명서 발급을 종용 받았으며(7/27/1948, Headquarters, USAMGIK, APO 235 Unit 2; 동아일보 1946년 12월 10일 조선일보 1947년 10월 12일), 신체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의 허가조치를 취소당하였다(7/27/1948, Headquarters, USAMGIK, APO 235 Unit 2). 성병에 감염 되었다고 판명된 여성들은 당시 성병감염자들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던 국립성병센터로 보내지거나(USAFIK 1947, No.27, 175), 성병에서 완전히 낫기까지 여성 감옥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방면되었을 때에도, 완치가 의심되는 매독환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가 강제되었다(USAFIK 1948, No 29 (February), 191). 그리하여 1947년 5월(성병 통제과가 설립된 시기)에서 1948년 7월까지 일여년 동안, 모두 14,889명의 성매매 여성들(성매매가 의심되는 여성들 포함)이 검사를 받았고, 이들 중 거의 60%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7/27/1948, Headquarters USAMGIK APO 235 Unit 2). 미군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만으로도 여성들을 처벌하였으며, 밀매음자는 일제시기 「경찰범처벌규칙」에 의거하여 처벌하였다(박정미, 2011: 62-63). 이는 일제시기 보건행정과 경찰행정이 일원화되었던 과정과도 연관된다. 이로써 전국 규모의 강제검진과 처치, 강제등록 등은 보건후생부 산하 성병 통제과 설립 이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2월 14일, 공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생, 창기, 댄서, 여급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미군의 성병 검진은 (1949년 6월 30일, 철수시기까지) 간헐적이지만 지속되

었다. 미군의 체계적 통제력이 상실되어 가던 1940년대 말이 되면서, 점차 한반도의 모든 여성들은 더럽고 불결한 성병의 도관(導管, conduits)이자, 미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가족과 건강을 위협하는 “척결 되어야 할” “악”이나 “적”으로 재구성되어 갔다(2/26/1949, No. 726.1 Headquarters USAFIK, APO 235, Instructor’s Lecture, “The Eternal Fight”(2), in Subject titled “Venereal Disease Control”).

다섯째, 다양한 성매매 형태를 활용했다. 소위 미군 ‘위안소’에는 ① 미군이 직접 운영하고 주로 군부대 안에 위치한 장교클럽과 사병클럽, ② 부대 근처에서 한국인 민간 업자가 운영하되 미군의관과 헌병이 지정하고 체계적인 통제를 받는 유곽형태(2/02/1949, Report from Joseph T. Caples, Lt. Col. MC Surgeon, 726.1), ③ 부대 근처에서 한국인 민간업자들의 의해 운영되는 미군 병사 전용클럽인 ‘도시 클럽(City Club)’(Ward 12 April, 1948) 혹은 군인 ‘서비스 클럽(service club),’ ④ 이외에 댄스홀, 카바레, 빠, 카페 등 일반인도 이용하되 미군이 주로 출입하는 유흥(entertainment) 시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 특히 미군 전용 서비스 클럽(service clubs)과 댄스홀은 공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미군 여가 시설로 존재하였으며, 종사자들은 엄격한 성병관리를 받았다.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 비록 미군은 전국 규모의 성병 조사와 관리, 유곽형태에 대한 미군 ‘위안소’ 지정, ‘위안부’의 거주지역 제한 등의 조처는 취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기생, 사창, 댄서, 여급 등을 대상으로 한 성병검사, 감염자에게 대한 성병 검사와 감금, 치료는 지속되었는데(2/26/1949, Headquarters USAFIK, APO 235, No.726.1),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군이 관리하는 성매매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현재적 개념에서 보면 ②번의 경우만 전업형 성매매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겸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군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미군 ‘위안소’를 건립하고 성병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만약 일제 시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공창제도가 미군 성매매의 제도적 기반이 배경이 되었다면, 일본군 ‘위안소’ 혹은 ‘위안부’ 제도와는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일까?

순차적으로 답해 보자면, 첫째, 미군정이 빠른 시간 내 다양한 미군 성매매 형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 식민지 유제 중 하나인 국가규제 성매매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 미군은 군정 초기부터 성병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으며, 성매매 업소 등록제와 성매매 (의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병 검사, 거주지 제한, 감염자 격리와 치료를 시행했다. 이러한 관행은 공창제도의 공식적인 폐지 이후(1948

년 2월)에도 비공식적으로 지속되었다. 일제가 도입한 공창제도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을 등록제, 정기적 검진,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집단거주(집창화를 통한 거주 제한), 이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공간적 구획화와 계토화, 정체성의 유형화를 통한 종별화라고 볼 때 미군정 당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통제 방식은 그러한 특징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의 기본 골격이며, 미군정도 이 같은 식민지 유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했던 것이다.

둘째, 미군은 일제 시기 건설된 집창지역을 그대로 활용했다. 성매매 여성/지역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동시에 효율적 성매매/성병 관리는 ‘집창’의 효과이자 원인이기도 했다. 사실상 미군부대는 일본이 건설한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일본군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본군 전용 공창지역이 미군의 성적 위안을 위해 적극 활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부평은 1945년 9월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한국 최초의 미군 위안소가 형성되었는데, 원래 일제가 1930년대 만주 사변을 지워하기 위해 건설한 병참기지가 공창지구이기도 했다. 미군은 일제에 의해 건립된 대규모의 조병창 건물을 활용하여 보급수송본부(Army Support Command Korea (ASCOM))를 만들고 한반도 이남지역 주둔 전미군 부대에 대한 병참, 보급, 수송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는 캠프 그랜트 (Camp Grant), 캠프 마켓(Camp Market), 캠프 타이러(Camp Tyler), 캠프 헤이즈(Camp Hayes) 등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군기지다(이임하, 2004b: 279; Yuh, 1994: 14; Global Security, 2006). 주지하다시피 미8군 사령부의 주둔으로 형성된 이태원 지역 또한 일본군 사령부의 심장부로 미군 사령부는 당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지역도 일제시기 군사령부를 미군이 대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주변에는 예외 없이 일제가 건설한 공창지역이 있었다.

실제 미군부대 주변의 공창지역은 “[이미 일제시기부터 시행되어 온 터라] 성병검진이 용이”하여 “주둔부대에서 성병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던 미군의 요청에 따라 1945년 후반부터 미국 병사들에게 “출입허가구역”(on limits)이 되기 시작했다(Meade, 1951: 220-221). 또 다른 미군의 보고서도 일제의 성매매 관리정책(의 유제) 덕분에 여성들의 거주를 “[미]현병대에 의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좁은 지역으로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군인들의 접근성과 효율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port from Joseph T. Caples, Lt. Col. MC Surgeon, Titled “Factors Influencing Rates, VD Rates during the Last Six Months of 1948 and January 1949,” 2 February, 1949).

셋째, 그러기에 미군이 활용했던 성매매 업소들은 형태면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군 ‘위안소’와 특징을 공유한다. 정진성(2005)이 지적한 일본군 ‘위안소’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공창제도에 따른 유곽과는 별도의 체계로 군인들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군속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군인들은 군위안소 외의 다른 위안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셋째, 군위안부는 군이 지정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았으며, 넷째, 위안부의 이동을 포함한 위안소의 제반 사항은 군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44). 미군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유곽시설을 활용하였으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활용한 미군 기지의 특성상 별도로 구축된 군인전용 시설이 있었을 것이며(군인 막사 이용 등), 미군의관의 면밀한 성병 검사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된 지정 장소만 미군이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무엇보다 **(아주 개별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군의 엄격한 통제와 규제 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일본군 ‘위안소’의 형태와 많은 점을 공유한다.

설치와 경영면에서도 일본군 ‘위안소’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와 경영면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는 것처럼⁵⁾ 미군 위안소 또한 ① **미군직영**, ②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미군의 관리·통제를 받으며 미군만 전속으로 이용하는 곳**, ③ **민간업자들이 경영하는 일반 업소이나 미군지정으로 미군의 편의를 특별히 봐주는 곳** 등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인 전용 업소이거나 성매매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군 개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 간 접촉하는 밀매음 형태도 존재했다.

요약하자면, 미군은 주둔 초창기부터 성병 자문회와 성병 통제과 설치,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성병검진 실시, 증명서 발급 등 성병/성매매 관리를 위한 제도들을 마련·시행해 왔으며, 일제가 남긴 유곽을 활용하거나 기지의 안과 밖에서의 장교/사병 클럽을 운영하는 등, 미군들을 성적으로 위무하기 위한 제도들도 동시에 시행했다. 놀라운 점은 국가적 규모의 관리가 힘들어진 공창제도 폐지령 이후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와 규제 관행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은 일본의 국가관리(국가규제 state-regulation) 성매매 체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일제가 확립한 시스템과 군사시설과 일본 군인을 위한 위안시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미군정이 제도적으로나 인적으로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놀랍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다.

5) 요시미 요시아키(2006)는 설치와 경영면에서 일본군 ‘위안소’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군직영의 군인·군속 전용 위안소, 둘째, 형식상 민간 업자가 경영하지만 군이 관리·통제하는 군인·군속 전용 위안소, 셋째, 군이 지정한 위안소로 일반인도 이용하지만 군이 특별한 편의를 요구하는 위안소가 그것이다(86).

문제는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위선적 금지주의, 혹은 실질적 국가규제주의라는 성매매 정책은 남성들의 '일방적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성)'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그러기에 남성(병사)들의 사기진작, 위안을 위해 여성의 몸/성 활용을 당연시하는 사고와 더불어, 성매매를 유지하면서 성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고안에 이르기까지 종전 후 남한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성매매 관행과 정책의 근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는 배경에 청산되지 못한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대를 관통하며 존재했던 군대 '위안소'들은 공히 제국의 병사들을 성적으로 위무하는 여성 집단/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자, 강인한 병사 만들기 정책의 일환이며, 젠더불평등과 인종적 질서를 활용하고 재각인하는 제국주의 통치전략이기도 했다. 우리 역사의 아이러니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간 위계질서를 활용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전략의 기반이 동북아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한반도의 미군에 이양되었다는 점이다(이나영, 2013).

3. 한국군 '위안부' 및 '양공주'의 탄생:

한국전쟁과 국가재건 시기(1950-1959년)⁶⁾

주지하듯, 한국 전쟁은 한국국민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전국토의 초토화, 엄청난 인명피해 및 분단의 고착화라는 외형적 피해는 내적으로 동족상잔이라는 원초적 죄의식과 분노, 고향과 가족에 대한 상실감, 이데올로기의 극적인 대립과 결합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겼다. 상징적/실질적 남성부재의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유지해야 했던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이란 지독히 제한적이었고 심지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전쟁 발발 직후 한국전에 투입된 외국군인은 1951년 약 20만 명에서 1953년에는 약 32만 오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여성의 정조관리라는 차원에서 '젊은' 외국 병사들의 성욕관리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한편, 성적 욕구 해소를 통한 군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국군 '위안소'도 설치도 고려되었다. UN군을 이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투에 지친 병사들을 위무하는 일이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특정 장소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병검진을 받게 하였으며, 허가받은 업자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창제도'를 부활하였다.

6) 이 장에서 인용표기가 없는 부분은 주로 이나영(2007b)에 있는 부분임.

이임하(2004b)에 의하면, 1950년 여름, 부산 위안소의 설치에 이어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1951년에는 부산에만 '위안소' 74개소와 UN군전용 댄스홀 5개소가 허가되었다고 한다. 유사하게 김현선·신영숙(2014)은 「미군 위안부의 역사에서 1952년까지 UN군 위안소는 78개소, '비공식 위안소' 600-700개소에 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3).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전방의 '이동식 위안소'가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 UN군 '위안소'는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여 설치하고 민간업자가 감독하는 형식과 민간업자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관계당국에 신청하고 이를 정부가 허가하는(관리하는) 방식**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이임하, 2004b: 130).

박정미(2011)는 한국군이 설치한 '특수위안대'가 비록 (공식적인 통계에 기반할 때)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으나, '위안부'라는 명칭이나 위안소의 형태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체제와 유사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군 '특수위안대'가 한국군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 **군전용 성매매 시설**이었으며 **군의관의 엄격한 검진과 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러하며, 특히 설치·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군 '위안소' 중에서도 군의 개입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인 **“군이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 ‘직영’ 위안소”**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45). 오랫동안 한국군 '위안소'에 관심을 가져온 김귀옥도 일본군 위안소 제도와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귀옥(2014)은 한국군 '위안부' 제도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관동군 등을 거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경험하고 철저히 일본의 군사문화를 체화했던 한국군 장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망령이 한국전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온전히 부활하게 된 것이다. 한국군 특수위안대의 존재는 공식적으로는 1954년 3월에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박정미, 2011; 김귀옥, 2014).

한편, 이승만 정부는 미군과 유엔군을 위한 '위안소'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박정미(2011)는 한국의 보건부가 1951년 10월 10일 결재한 '청소 및接客영업 위생사무 취급요청 추가지시에 관한 건'(보건부 방역국 예규 제1726호)에서 연합군 위안소와 위안부에 관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음을 밝히고, <공창제도등 폐지령>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국가관리 대상으로서의 전업형 성매매의 부활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와 동일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 '위안소'는 **유엔군 주둔 지구에 “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설치되었으며, **한인의 출입이 금지된 연합군 전용接客 시설**이었다. (외국)군인 전용 시설이자 정부가 '위안부'를 검진하고 통제했다는 점에서, 그간 학자들이 지적해 온 일본군 '위안소'의 특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52-53).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위안소 설치를 “직접명령”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위안시설이 “주둔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성병검진의 형식과 결과 역시 “외국헌병대에도 연락”해야 할 사항이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박정미, 2011: 102-104; 김귀옥, 2014: 109), 위안소 설치를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설치와 운영, 성병관리에 미군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한국 정부의 성매매 관리정책은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의 성병감염 증가와 성매매 관리에 대한 연합군 측의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한 노력과 연관되기도 한데, 실제 적극적인 성매매 관리정책을 통한 성병통제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이나영, 2007b: 12-13).

전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초토화된 산업시설과 불안정한 정세의 지속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의존은 절대화되었다. 미군 주둔은 한국국민과 정부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졌고 미군(외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급증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대부분의 경제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곤궁하고 암울하며 희망 없는 시기를 견디어 내야 했던 여성들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현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이 끝나자 외국 군인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의 수가 서울 지역에만 약 20,0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조선일보, 1953. 7. 27), 한국일보는 1955년 전체 110,642명 중 미군상대 성매매 여성이 50%가 넘는 61,833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한국일보, 1956. 4. 29). 이임하(2004a: 136-137)는 공식·비공식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1950년 당시 성매매 여성 수는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었으며, 이중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은 약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한 수치는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여성이 각자의 교육적·가족적 배경과 무관하게 생계가 힘든 가족부양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미군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주목할 점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공식·비공식 자료들에서 ‘양공주’라는 용어가 ‘위안부,’ ‘UN 마담,’ ‘양색시,’ ‘양갈보’ 등의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미군정 시기와 달리 미군의 엄청난 양적 증가와 이로 인한 가시성,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 등으로 인해 ‘양공주’들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된 것만은 분명하다. 미군정 시기 공식 통계 72,000에서 최대 77,600명이었던 미군의 숫자가 전쟁 시 연 최대 인원 325,000명, 휴전 직후 총 8개 사단 36만 명(미군정시기 대비 약 4.5배에서 5배 증가)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상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각종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잡지, 영화, 소설 등에도 빈번히 등장하는 ‘양공주’ 내러티브는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로서는 이들을 ‘일반여성’들과 분리하고 구획화하는 것이 시급했다. ‘양공주’의 수적 증가 이외에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과 일반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괄 통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해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풍기문란’과 더불어 저급 퇴폐미국 문화의 유입통로로 ‘양공주’를 지목하여 분리의 정당성을 마련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통’의 환기를 통해 전후 재건과 근대 국가 형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실과도 연관된다. 당시 폭넓게 퍼져 있던 “한민족의 순혈을 흐리는 ‘양갈보’”라는 담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순수한 혈통유지가 민족 재건의 주요한 기틀임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양공주’ 여성들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 1957년 7월 1일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의 서울 이동이 확실해지자,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증가 및 성병확산에 대한 우려는 확대되었으며, 마침내 한국정부는 여성들 간 분리와 구획화를 현실화하게 된다.

첫째, 이승만 정부는 **성병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게 된다. 보건사회부는 1957년 2월 28일부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제정 3년 만이었다(제정은 1954년 2월 2일). 이에 따라 성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강제적 건강진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고, 요양소와 진료소 설치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건강진단 대상으로(제4조)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일주일에 2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때 ‘위안부’는 미군 ‘위안부’를 의미했으며, 이들은 전업 성매매 여성과 동일시되어, **강제적 성병검진과 감금치료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둘째, **미군(외형상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공간을 구획화하고 관리 대상 여성들을 집중시키게** 된다.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한지 5일 후인 7월 6일,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은 ‘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라는 안건으로 모여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숙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합의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차관회의 안건으로 “유엔군 접대부(위안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켜 성병을 관리”하는 방안, 혼혈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산아제한 방안, 접객업소 지정 등이 제출되었으며, 제30차 차관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박정미, 2011: 130-131).

이처럼 미군 대상 성매매를 일정한 지역에 격리하여 통제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 측의 의도는 군인들의 안전한 섹스와 성병통제를 고심하던 미군 측 이해관계와 맞물려, 1957년 보건사회부 산하 성병진료소 89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개소가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

울, 부산, 대구, 파주, 양주, 평택 등 6개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이입하, 2004a: 241). 또한 서울에 카바레, 호텔, 요리점, 음식점 등接客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이 미군 전용시설로 지정·설치된다(이입하, 2004a: 232-233; 박정미, 2011: 131).

이로써 특정구역 지정, 성병검진 및 각종 통제와 관리라는 국가규제 성매매체제는 ‘양공주’라는 정체성 구성과 본격적인 기지촌 형성으로 이어졌다. 파주의 용주골, 동두천 보산리, 덕걸이, 의정부 뺨벌, 송탄, 평택, 안정리 등은 당시 자그마한 촌락에서 급속히 변모한 대표적인 ‘기지촌들’이다. 이들은 이후 냉전체제와 군사주의 경제를 등에 업고 성장하였으며, 발전 국가 시기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윤락행위방지법’에도 불구하고 ‘특정구역’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경제발전과 안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생략하니 이나영, 박정미, 캐더린 문 등의 논문과 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4. 여성운동과 소송의 의미

이러한 억압적 제도 속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무력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다. 기지촌 성매매, 혹은 미군 ‘위안부’ 제도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⁷⁾ 사실상 1970년대 기생관광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나, 본격적인 운동의 발전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Lee, 2011). 논의의 초점을 위해 이 장에서는 주된 역할을 했던 세 단체를 중심으로 간략한 개괄과 의의만 짚어 보고자 한다.

<두레방>은 1984년 3월 17일, 의정부시 가능동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앞)에 개관했다. 1984년에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미국장로교회에 두레방 프로젝트를 신청함과 동시에 문혜림 선교사 파송할 것을 요청한 것이 설립 배경이다. 당시 민주화 인사로 저명했던 문동환 목사의 미국인 부인 문혜림 고문은 유복남 초대 관장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상담, 영어와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였다. 두레방은 비슷한 시기 개관한 <막달레나집>과 더불어 1986년 <한소리회>를 결성하여(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실무자 모임) 오늘날까지 반성매매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두레방에서 시작한 기활출신 활동가 김현

7) 기지촌 내 수많은 여성들의 간헐적이나마 집단적 저항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생략한다.

선 (전)대표가 주도한 <새움터>(새싹이 움트는 곳)는 동두천에서 1996년 개관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 기지촌 문제를 한국사회에 제기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도사 우순덕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햇살사회복지회>는 2002년 평택 안정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화요 기도회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생존자 임파워먼트에 주력해 왔으며, 생존자들이 얼굴을 공개석상에서 증언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연대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햇살사회복지회>만의 꾸준한 활동, 이를 통해 구축된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 단체는 시기와 공간, 개관 당시 주요 활동 목표 및 주된 활동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말 걸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다. 이들은 비록 기지촌의 성매매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입장에서 구조를, 국가를, 역사를 다시 보고자 한 최초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기지촌 특수성을 인정하되 전체 성매매와의 연결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미제국주의, 군사주의, 독재체제와 연결된 한국 기지촌만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운동의 출발점을 삼았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성매매체제와 분리하여 사고하지 않았다. 한국의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의 모순된 결합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운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됨-도 이들은 공유한다. 셋째, 유령 같은 존재이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의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의 과정 속에서 “말하는 주체”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공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견고한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저항하고 균열을 내고자 했으며, 동시에 말하는 서브알틴의 형상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배적 문화코드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와 더불어 2012년, 공유된 신념을 기반으로 한 느슨하고 유연한 연대체,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결성한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6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생각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의미화하고 이들의 경험에서 출발한 저항적·대안적 역사 인식의 가능성을 열었다. 소장에는 이들의 피해 경험을 이들의 입장에서 구체화하고 유형화함으로써⁸⁾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구조적

8) 소장에는 이들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18개 세부항목으로 유형화하여 적시하고 있다: (a)성폭력, (b)구타, (c)감금, (d)성매매강요, (e)화대 착취, (f)인신매매, (g)마약 투여, (h)강제낙태, (i)자매회 등록 및 회비 납부, (j)성병 검진, (k)강제치료, (l)공무원에 의한 연행, (m)낙검자수용소 감금 및 강제치료, (n)수사기관 구금, (o)정부의 교육, (p)업주와 공무원 유착비리에 의한 피해, (q)미군범죄 피해, (r)미군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자임을 명시했다. 이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작업이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언설화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직·간접으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겪을 것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정체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잠정적인 고정과 변화라는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정체화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의 소송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수많은 서브알턴들에게 깊게 각인된 억압과 고통, 폭력과 상처의 기억들을 언어화하고 새롭게 드러나게 하는 역사적 과정과 깊게 연관된다. 지속적인 내러티브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생존자로, 생존자가 다시 역사를 재구성하는 운동의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 목도해 오지 않았던가. 이들은 스스로 “기억 보존의 불평등”을 깨는데 기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송은 피해자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할 또 다른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항적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이번 소송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원고들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 묵인,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을 역사적 진실로 규명하고자 한다.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폭압에 동조하고 심지어 편승하여 소속 국가의 국민들 중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 착취하고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심지어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한 국가가 과연 국가인가?⁹⁾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여성은 온전한 국민인가? 어떤 여성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회적으로 내포한 이번 소송은 젠더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여성성 (재)구성과 활용을 통한 국가통치 전략을 폭로한다. 그리고 아프게 다시 질문한다.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들에 내재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국가가 늘 이중적이고 배제된 집단**

9) “국가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모성보호, 건강권, 보건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성매매 행위의 유인·권유하거나 그 처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정부와 그 소속 공무원은 스스로 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시설을 설치 → 공고화 →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국민들을 격리·소외시켰으며, 성매매를 돕기 위하여 성병관리·검사, 심지어는 위험한 약물치료와 감금까지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기지촌의 존재는 물론 그 자체가 윤락행위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위생법·전염병예방법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기지촌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면서 그를 통하여 미군의 지지와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기지촌의 형성 및 유지·관리,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인권침해들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자행한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지촌 위안부 여성이었던 원고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위법행위로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소장, 2014: 27-28).

에만 부정의하다면 우리는 어떤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 특히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아니 진정한 탈식민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희망일지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입증하는 소송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더 아픈지도 모르겠다.

셋째, 그러므로 이번 소송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요구한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구조를 먼저 통찰해야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와 미성년 성매매와 성폭력, 강제노동, 모독, 멸시, 배제, 감금, 폭력, 임금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로 점철된 미군 ‘위안부’ 문제는, 기실 우리 모두의 공모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매매 제도의 부끄러운 역사적 실재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개별적이거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기에 나타난 특수한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성 보편의 문제 중 하나다. 무엇보다 기지촌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이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수혜자였던 ‘우리들’의 ‘일상의 승인(daily acceptance)’(Enloe, 2000: 67)이 없었다면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의 부동산 업자, 지역 공무원과 경찰, 클럽 주인들, 상인들, 포주들, 가족들, 아니 우리 모두는 미군 성매매 제도를 유지하고 재생산한 일상의 공모자들이었다. 공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자 하는 경험과 역사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이는 부인과 억압 속에 가라앉았던 기억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내고 재구성할 때 가능할 것이며,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혀 왔던 망령, 그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전승할 자격조차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우리 스스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이번 소송은 기억의 정치학의 중핵에 위치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그간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젠더질서를 통해 민족적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전략 중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면, 미군 ‘위안부’ 제도 역시 젠더와 인종질서가 결합되어 나타난 효과이자 점령군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높이고 점령지를 통제하고자 한 미군정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두 제도는 공히 군사화된 세계질서 속에 제국/점령국/식민 지배국 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면서 성병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피지배국, 혹은 주둔군 여성들의 성적 통제를 위해 고안되고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피식민 남성 또는 로컬 정부의 동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

능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젠더질서와 친화력을 지니지만 동시에 인종, 민족(지배자/피지배자)과 결부되어 젠더질서를 재구성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상대국(침략국, 지배국)의 성적 침해를 입은 여성의 몸은 지역의 민족주의와 글로벌한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경합하면서 동시에 상보적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젠더-섹슈얼리티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봉합되는 국제질서, 국가관계, 안보 패러다임의 역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항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이나영, 2013).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일제의 공창제도가 한반도 근대 성매매 역사의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 미군정 시기 시작된 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 식민지의 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를 청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 형태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인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도적 탈식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국 정부 및 특정 지배 집단은 이러한 제도의 수립자이자 체계적인 이익의 수혜자였기 때문-등을 뼈아프게 인식하는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 또한 개별적 책임과 도덕의 문제,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단순한 법적·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성찰과 공감에 기반한 인정과 사죄의 문제이자 전승된 역사적 책임과 초국적 정의의 이슈라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일제에 의한 상흔과 주둔군에 의한 폭력과 착취, 청산되지 못한 식민성과 역사적 책임의 문제에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정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이나영, 2013: 28).

이제 우리 스스로 부정의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족: 남은 과제〉

1. 듣는 자들의 재구성과 경험에 대한 이해,

공감할 수 있는 청중 구성의 문제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주체를 설명하는 일정한 서사 속에 배열될 때만 비로소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경험은 언제나 이미 하나의 해석인 동시에 해석의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다(Scott, 1988). 경험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주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 새롭게 해석되는 세계(관) 속에 어떤 경험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의미화 되며, 또 다른 것들은 ‘망각’이라는 이름을 빌어 침잠하거나 무/의식 속에 부유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경험은 의미화될 수도 무의미한 망각의 공간 속에 다시 재각인될 수도 있다. 이는 공감할 수 있는 청중 구성 전략과 연관됨.

2. 운동의 궁극적 목표 설정과 전술적 역량 강화

소송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전지구적 공분을 일으키며 초국적 연대의 가능성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내외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전지구적 환기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국적 연대(공분하는 세계 시민)가 결성되었다는 점. 이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3. 전승된 책임성 강조의 문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우리 스스로가 자행해 온 다양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배상이 필요함. 정의에 기초하는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에는 소멸 시한이란 존재하지 않음. 우리가 저지른 다양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들 피해자와 연대하고 공동으로 의제화하는 문제.

4. 젠더역사로 재구성할 책임

성별화된 역사(남성중심적 역사),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성차별적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야 함. 페미니스트 운동의 역사로 재구성할 책임.



주제 발표 2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배수명

I. 서론

기지촌여성들은 국가가 조성한 기지촌지역에서 주한미군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되는 동안 첫째,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검진,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받았음. 둘째,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강제 음주 등의 피해를 경험하였음. 셋째, 성구매자인 미군들로부터 감금, 폭행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철저히 소외되었음.

피해 당시 기지촌여성들은 대부분 포주들에게 감금 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신속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현재의 신체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일부 여성들의 경우 치료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아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못함.

현재 기지촌여성들은 대부분 5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그러다보니 질병이 있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등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건강과 의료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 그리고 환경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장애가 심각한 수준임.

기지촌여성들은 과거 기지촌 성매매 피해로 인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성매매의 특성으로 인해 부인과 질환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본 연구에 동의한 대부분의 기지촌여성들은 현재의 신체적 질환이 수십 년 간 기지촌 성매매 피해 때문에 일반여성들과 보다 신체적 질환이 심각함을 알려내기 위해 개별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였음.

II. 연구목적

서론에서 밝힌 바,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지촌여성들을 주한미군의 성적 서비스 대상으로 동원하면서 이로 인한 기지촌여성들의 성병 외,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는 외면 함. 이에 기지촌여성들의 국가 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문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인권사 각지대에 있는 기지촌여성들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또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II. 연구대상 및 방법

자료 활용에 동의한 기지촌여성들의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합하여 총 45명의 검진결과를 분석하였음. 의료이용결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의료이용자료 활용에 동의한 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본 연구에 동의한 기지촌여성들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연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 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기관에서 분류한 질환을 분석함.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활용하는 건강지표의 기준과 동일하게 산출하고 해당 연령대의 평균치와 비교하였음.

주요 건강지표는 비만(체질량지수 기준, 허리둘레 기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고 콜레스테롤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만성콩팥병(중등도이상), 빈혈, 시력장애, 난청 유병률 등임.

※ 구강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지표로 제시하지 않음.

의료이용내역은 최근 2년간 이용한 병의원 이용 상병명을 기준으로 의료이용횟수 및 의 료이용률을 산출하였음.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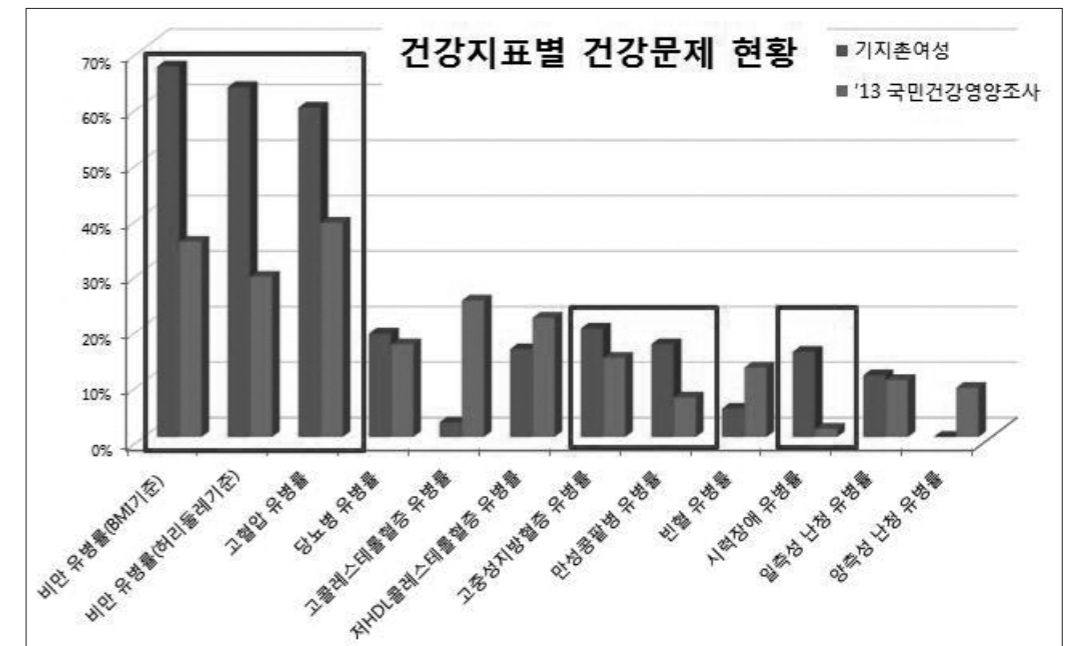
1. 건강검진 결과

1) 조사대상

건강검진 연구대상자는 여성 45명이었고, 연령을 알 수 없는 5명을 제외한 평균연령은 63세, 연령대별로 40대 5명, 50대 9명, 60대 15명, 70대 11명이었음.

2) 주요 건강지표별 건강문제 현황

비만 및 고혈압, 시력장애 유병률은 우리나라 국민 40세 이상 연령대별 유병률과 비교 시 모든 연령대의 결과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중성지방혈증 및 만 성콩팥병 유병률도 소폭 높게 나타났음.



건강지표	기지촌여성		참고치 ('13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체(명)	유병률(%)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비만 유병률(BMI기준)	26명	65.4%	25.7%	33.7%	42.7%	38.6%
비만 유병률(허리둘레기준)	26명	61.5%	13.5%	21.4%	36.8%	43.7%
고혈압 유병률	26명	57.7%	10.7%	30.6%	48.8%	64.3%
당뇨병 유병률	42명	19.0%	4.4%	9.0%	22.1%	31.3%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38명	2.6%	8.0%	26.8%	34.5%	29.0%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37명	16.2%	14.0%	16.3%	24.9%	30.7%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	40명	17.5%	9.3%	14.3%	16.7%	16.7%
만성콩팥병 유병률	23명	13.0%	1.4%	2.0%	7.3%	17.7%
빈혈 유병률	38명	5.3%	18.6%	5.8%	7.5%	18.0%
시력장애 유병률	25명	16.0%	0.0%	0.3%	1.2%	4.4%
일측성 난청 유병률	26명	11.5%	3.3%	6.7%	12.6%	18.4%
양측성 난청 유병률	26명	0.0%	0.4%	2.0%	7.3%	25.7%

i) 주요 건강지표별 건강문제 현황은 기지촌여성 평균값과 '13 국민건강영양조사의 40대 이상 평균값으로 비교하였음.

ii)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참고치는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이며, 시력장애 및 난청 유병률 참고치는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임.

iii) 각 항목별 미검사자 수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만성콩팥병, 빈혈, 시력장애, 난청 명임.

iv) 건강지표정의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부 지표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약물복용을 한 경우도 유병자로 포함하여 지표를 산출하므로 비교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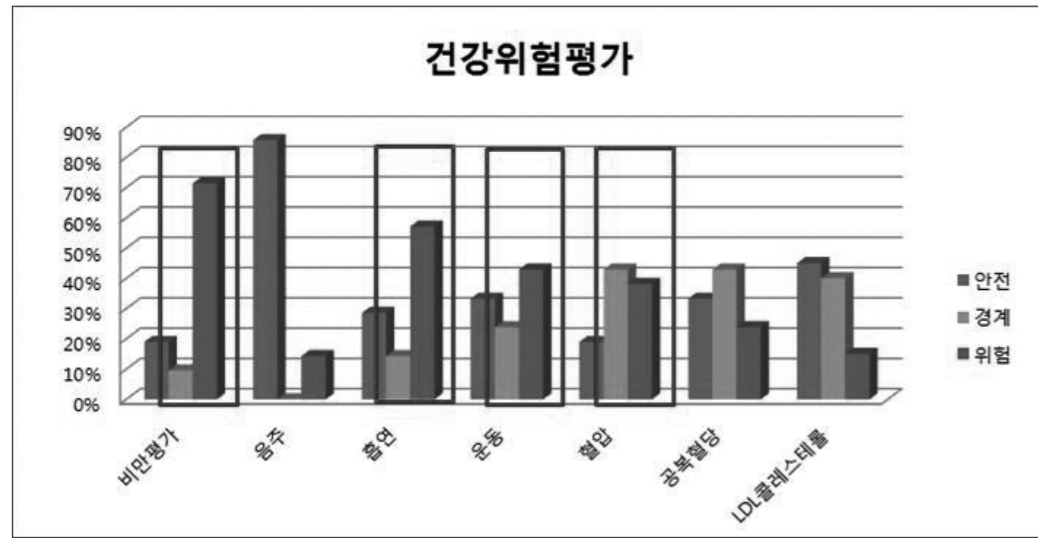
- ① 비만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을
- ② 비만유병률(허리둘레 기준) : 여자 85cm 이상인 분을
- ③ 고혈압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분을
- ④ 당뇨병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인 분을

- 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인 분을
- ⑥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HDL콜레스테롤이 40mg/dL 미만인 분을
- ⑦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 :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분을
- ⑧ 만성콩팥병 유병률 : 사구체 여과율(MDRD-GFR)이 60mL/min/1.73m²미만인 분을
- ⑨ 빈혈 유병률 : 15세이상 비임신 여성 12(g/dL), 임신 여성 11(g/dL) 미만인 분을
- ⑩ 시력장애 유병률 : 단안 또는 양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32 이하인 사람의 수
- ⑪ 일측성 난청 유병률 : 일측의 청력평균치가 40dB이상인 분을
- ⑫ 양측성 난청 유병률 : 양측의 청력평균치가 40dB이상인 분을

3) 건강위험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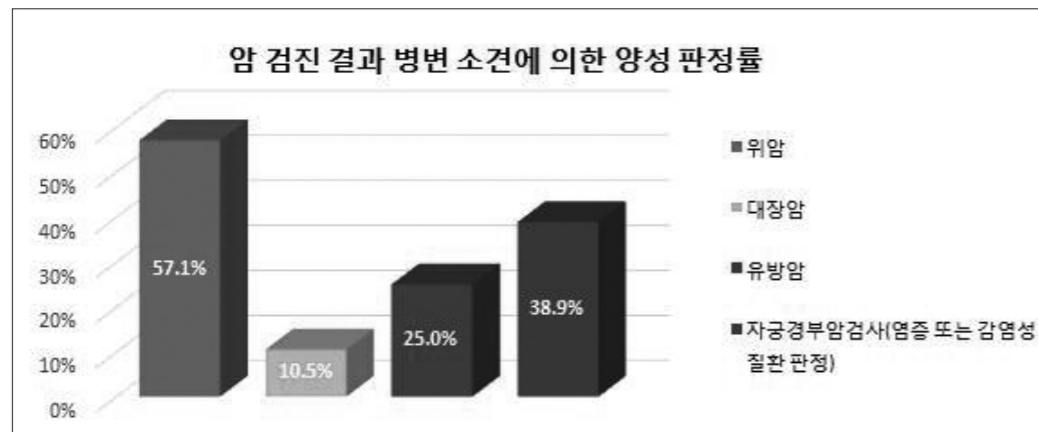
기지촌 여성의 검진결과, 비만 위험이 매우 높고 뇌졸중, 협심증 및 심근경색, 혈관성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위험요인	전체(명)	위험판정률(%)		
		안전	경계	위험
비만평가	21명	19.0%	9.5%	71.4%
음주	21명	85.7	0.0%	14.3%
흡연	21명	28.6%	14.3%	57.1%
운동	21명	33.3%	23.8%	42.9%
혈압	21명	19.0%	42.9%	38.1%
공복혈당	21명	33.3%	42.9%	23.8%
LDL콜레스테롤	20명	45.0%	40.0%	15.0%



4) 암검진 결과

위암 검진 결과 검사자 21명 중 57.1%는 점막하종양, 양성위궤양, 위염, 식도용종,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등에 의한 양성판정을 받았고, 대장암 검사자 19명 중 10.5%가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어 양성 판정을 받아 대장에 병변(염증, 용종, 암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방암 검사자 20명 중 25.0%가 유방에 양성석회화 있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0%는 종양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함에 따라 판정유보 판정을 받았음. 자궁경부암 검사자 18명중 38.9%는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 판정을 받았음.



암검진 항목	기지촌여성	
	검사자(명)	병변 소견에 의한 양성 판정(%)
위암	21명	57.1%
대장암	19명	10.5%
유방암	20명	25.0%
자궁경부암	18명	38.9%

- i) 위암 검진 결과 위에 점막하종양, 양성 위궤양, 위염, 식도용종,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등과 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 양성판정을 받음.
- ii) 대장암 검진 결과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면 대장에 염증, 용종, 암 등과 같은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양성판정을 받음.
- iii) 유방암 검진 결과 양성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어 양성판정을 받았고, 유방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의심 될 경우 유방촬영만으로는 검사가 불충분할 수 있어 판정유보 판정을 받음.
- iv) 자궁경부암검진 결과 반응성 세포 변화 양상이 관찰되어 염증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판정을 받음.

2. 의료이용 결과

1) 조사대상

의료이용 분석대상자는 여성 43명이었음.

2) 의료이용 결과

2년간 1인 평균 병의원 이용횟수는 96.5회이며, 관절염, 허리, 어깨 등의 근육 통증 등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가장 높았음. 눈질환으로 인한 안과, 귀 질환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과 이용률이 약 60% 수준이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내과 방문 및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병의원 이용률이 약 48%의 높은 수준이었음.

질환명	전체(명)	병의원 이용횟수 (회)			병의원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고혈압	43	6.91	0	49	48.8%
당뇨병	43	3.09	0	41	34.9%
이상지혈증	43	1.60	0	23	20.9%
눈 질환	43	6.84	0	50	60.5%
귀 질환	43	0.88	0	9	30.2%
위장 질환	43	4.26	0	36	60.5%
유방 관련 질환	43	0.21	0	7	4.7%
여성질환	43	0.79	0	7	25.6%
관절염 및 근육 통증	43	35.95	1	166	100.0%
피부질환	43	1.63	0	8	44.2%
비뇨기계 질환	43	0.44	0	7	2.3%
구강질환	43	3.09	0	23	60.5%
정신질환	43	7.53	0	33	48.8%
골다공증	43	0.88	0	17	11.6%
천식 및 알레르기	43	3.42	0	65	2.3%
기타 질환	43	18.84	0	84	97.7%
1인 평균 의료이용 횟수	43	96.53	4	285	-

- i) 눈 질환은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임.
- ii) 귀 질환은 중이염, 고막파열, 고막염, 이명, 전정기능 장애 등임.
- iii) 위장 질환은 위염, 식도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임.
- iv) 여성 질환은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질염,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임.
- v) 피부 질환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지루성피부염, 습진, 건선 등임.
- vi) 구강 질환은 치아우식증, 치주염, 치수염, 상악동염, 아프타성 궤양 등임.
- vii) 정신 질환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성 에피소드,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임.
- viii) 기타 질환은 폐렴, 기관지염, 협심증, 설사, 감기 등임.

건강검진 결과 유병자로 진단받은 자 중 해당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의 분율을 산출한 결과 당뇨병, 위장 질환 유병자의 경우 70% 이상이 해당 질환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으나, 고혈압 및 이상지혈증 유병자 중 해당 질환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사람은 33%~38% 수준이었음.

질환명	기존 여성	
	유병자수(명)	의료이용률*(%)
고혈압	13명	38.5%
당뇨병	8명	75.0%
이상지혈증	9명	33.3%
위 관련 질환	10명	80.0%
유방 관련 질환	4명	25.0%
여성질환	6명	16.7%

* 의료이용률 ; 건강검진결과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유병자 중 지난 2년간 동일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의 분율

3. 기지촌여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조사대상

2015년 6월 3일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에서 새움터에서 생활하는 기지촌여성 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함. 연령대는 61세부터 70세 이상의 높은 연령대이었음.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들은 신체가 불편하여 근로능력이 없거나, 수족을 쓸 수는 있으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써 새움터의 자립·자활지원에 참여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었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는 공신력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육성을 전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음.

그 내용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검진,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받았던 사실과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강제 음주 등의 피해에 대한 사실, 그리고 구매자인 미군들로부터 감금, 폭행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와 같은 일들은 인신매매와 구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고 기지춘여성들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일들이었음. 탈출할 수가 없었던 감금 상황과 그 긴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상하고 포주들에게 억류되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힘든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호소함.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에도 불구하고 치유 받고 싶은 첫 바람이자 몸부림이며 힐링의 시작임. 이렇듯 사회일원으로서 재활의지를 표명하며, 정당한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닌 사회적 공감과 지지로 나머지 인생을 좀 더 건강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자신의 건강 회복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임.

포커스 그룹 인터뷰내용 일부 발췌

인터뷰 내용 1) :

10대에는 외국인 구경도 못했던 시절, 티비도 없고 문화도 없던 시절에 (생략) 웬 아저씨들이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시절에는 판잣집 이었는데 쪽방 같은 미닫이문에 허름한 침대, 허름한 테이블 탁자와 재떨이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았다. 흑인이 들어왔다. 외국인을 처음 보니 공포 그 자체였다. 밥 주면서 검진을 해야 한다며 패스를 만들어주고 검진을 시켰다. 페니실린 뿌연 우유 주사를 넣었다. 진짜 아프다. 너무 많이 맞아서 다시는 맞기 정말로 싫다. 자궁도 들어냈다. 몸도 미군들에게 맞아서 다 망가졌다. 정부는 책임을 안 진다.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근로능력서를 가져다 주어도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나는 정부가 땅덩어리 다 준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 (중략) 집 구조들이 도망치기 힘들게 되어있었다. 클럽 안에 방을 도망가려면 주인집을 지나쳐야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어려웠다. 클럽에 들어가려면 검진을 해야 했다. 클럽 업주와 경찰들이 한 편이었다. 송탄 거기서는 신고해봐야 클럽업주인 포주에게 경찰이 인계해서 주었다. (중략) 성병검진을 안 받았을 경우 토벌이라고 하는데, 직업보호소 같은 곳으로 보내져서 정신순화교육을 받는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내용 일부 발췌

인터뷰 내용 1) :

(중략) 포주들이 우리를 데리고 인간장사를 했다. 클럽이 빙 둘러싸여 있었고, 클럽 포주들끼리 돈 못 버는 여자들을 거래하는 마이가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만약 80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번다면 다른 클럽으로 넘기는 식이었다.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이 없었다. 내가 500원이 필요하다고 포주에게 빌리면 이자가 한 달 단위로 올라갔다. 포주 집에 남자 풀마니가 있었고 솟타임이라는 것이 있었다. 미군이 오면 미군하고 포주와 돈을 나누고 포주는 내가 끝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였다. (중략) 병(풍, 심장, 당뇨)이 많이 있어서 일을 못하니깐 나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47만원 한 달에 받고 살고 있다. 60세가 넘으면 노인연금이 나오지만 아직 그 나이가 되지 못해서 노인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다. 식당 같은 곳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일을 써주지 않는다. 일을 구하려고 하면 나 같은 노인네가 아니라 중국 동포, 젊은이들을 인력으로 쓰고 있어서 일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V. 요약

기지촌여성들의 국가건강검진 결과, 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만성콩팥병 시력장애 유병률이 우리나라 국민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암검진 결과 양성 판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건강검진 결과 유병자로 진단받은 자 중 해당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의 분율을 산출한 결과 고혈압 및 이상지혈증 유병자 중 해당 질환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사람은 33%~38% 수준이었음. 기지촌 여성들은 이러한 질환이 과거 기지촌 성매매 피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함.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향후 기지촌여성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현 상황을 과거의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며, 기지촌 여성들이 가지는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바라보고,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과 주치의와 같은 개념으로의 치유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향 후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마련 및 제도적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문헌

고부일, 배수명, 신보미, 신영숙, 2015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문 1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신영숙 (새움터 대표)

I. 들어가며

2015년 5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될 무렵,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정문이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활성화된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미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행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음은 물론, 지금도 주한미군이 다루는 탄저균의 양이나 배달경로, 관리체계, 정확한 용도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매체에 따라 80~90%의 치사율로 알려진 ‘생화학 무기로서의 탄저균’은 인근지역, 특히 평택시 신장동 일대 기지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언론보도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다는 등 요란을 피웠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였고, 결과발표에는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의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주한미군 부대이다. 그리고 ‘기지촌’은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 받았으나 동시에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온 곳이다. 그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군 위안부들이 느꼈을 불안과 고통,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II. 기지촌의 형성

주한미군은 일제 강점기 이후 1945년에는 해방군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1953년부터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들을 위해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관리를 박정희 정부 이전부터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전쟁직후의 가난과 혼란 속에서 잘 이행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원조와 정권유지를 위해 미군주둔과 원조가 절실한 상태였으므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지촌을 ‘개선’하였다.

수도용 기재 차용문제 등 논의
수도용 기재 차용문제 논의
지구한미연석회의

서울시와 미팔군 서울지구 사령부의 간부 연석회의가 10일 상오 10시 시 회의실에서 열렸다.

5,16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한미연석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수도용 염소 소독약 공급 문제 기계자재의 수시 차용 팔군 보유 대수「ㄱ푸」대여 등 수도 문제를 비롯하여 철거용 천막원조 「유엔군 위안부의 관계」 「유엔군 위안 장소설치문제와 그 밖에 AFAK계획에 의한 학교 건축 자재 배정문제 등 여러 부분에 걸쳐 협의 하였다.

이날회의에는 한국 측으로 서울시장, 부시장, 교육감 등 미군 측에서는 서울지구 사령관을 비롯 십 여명 간부 장교가 참석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8월 10일 >

십지어 1961년, 11월 8일 국제법으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1961년 11월 9일 국내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고도 북의 전쟁도발위험과 외화획득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눈을 속여 기지촌을 형성하고 기지촌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행정력과 제정을 동원하였다.

1961년 8월,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미군들의 위안시설인 클럽 운영자들에게 위안시설 설치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963년에는 면세 주류까지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클럽 운영 및 설치에 대한 규정은 경기도의 유엔군용 특수음식점 영업위생행정 사무취급요령을 확대하여 모든 기지촌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1963년에 유엔군용 특수음식점 영업위생행정 사무취급요령은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그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10조제 1항 제 3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특수음식점”을 인정하고 1963.10.19.부터 시행함을 공고한다.¹⁾

1963년 10월 19

보건사회부
장관 정희섭

특수음식점

1. 목적

주한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10조 제 1항제 3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특수음식점”의 업종을 인정하고 그 없소의 위생시설의 규격과 허가사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본 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음식점의 정의

주한 유엔군의 건전하고 명량한 유흥과 휴식처로 공하기 위하여 접객부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여 양식무도행위를 행케하는 업태로서 유엔군만을 출입케 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지역선정

특수음식점 영업소는 유엔군 밀집지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지역으로서 관공서·교육기관·사회사업기관 및 종교단체 사원·병원 기타 정숙을 요하는 건물로부터 직경 1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기지촌 특정지역 위안시설 설치와 미군 위안부들의 성병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기지촌의 초석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을 동원하였다면,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한 자국의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닉슨독트린 발표 후에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의 성병검진을 강화하여 미군이 ‘안전한 섹스’를 있도록 하며 당시 미국 내외로 문제되고 있던 인종차별문제의 완화, 주한미군들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지촌 환경개선, 그리고 미국이 직접 국내 기지촌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에 한미친선회까지 구성하였다.

1) 보건사회부 공고 제 1, 063호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끊임없이 기지촌 정화대책을 발표하고 기지촌 정화사업을 진행되었고 현재도 기지촌은 관광특구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영업형태는 스포츠바, 맥주바 등으로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기지촌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II. 국가폭력, 미군 위안부제도

1) 유입

미군 위안부의 기지촌 유입경로는 다양하나 대부분 인신매매 된 경우였다. 또 상당수가 미성년인 10대에 유입되어 수십 년 간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새움터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소개소를 찾았다가 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납치되어 기지촌을 알게 된 경우와 친구의 소개로 기지촌에 유입된 경우도 다수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여성들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낙인하고 있다. 이는 기지촌의 진실을 은폐하고 모든 것을 기지촌에 유입된 여성의 개인사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유입연령과 경로, 기지촌의 설치와 관리, 정기적인 '애국교육', 빛과 질병, 포주 등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가해 등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라는 거대권력이 개입된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폭력성,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위안부들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미군위안부들의 '자발성'논란은 일소(一消)될 것이라 확신한다.

2) 미군 위안부 등록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성병관리를 큰 난제로 여겼다. 이는 「유엔군 사령부의 요청 때문이었다.²⁾ 하지만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등록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2) 김현선, 신영숙(2014), 미군 위안부 자료집, 새움터, 15p

서울시경은 30일부터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에 대해 각 경찰서 여 경반에서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서울시사회국의 「유엔」군 상대위안부 성병관리사업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등록의 대상자는 법적혼인관계가 없이 외국인과 동거하는 여성 그리고 「유엔」군 상대 위안부 전원이다.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거주 유엔군 상대위안부수는 819명이다.

〈경향신문: 1961년 9월 14일 3면〉

당시 미군 위안부들은 자매회, 보건소, 미군부대에 자신들의 정보가 보관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강제 성병검진 및 강제 치료

.....

(라) 성병관리의 강화

법정검진을 철저히 하고 검진을 필한자에 한하여 위안부행위를 허용한다.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성병진료소 감독원(의사)10명을 증원 배치했다.

〈경향신문, 1962년 9월 10일 7면〉

정부는 1962년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미친선위원회에서 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군 측에 요청하였다.

.....
 성병검진 필증을 갖지 않는 위안부와의 유흥을 금지해 줄 것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위안부와의 유흥을 금지해 줄 것
 <경향신문, 1962년 9월 11일 7면>

미군 위안부들은 1965년 이전에는 미군 측으로부터 1965년 이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성병관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받았다. 미군 위안부들은 첫째, 성병검진에서 낙검 될 경우, 둘째, 토벌 단속에 최근 일자의 성병검진 확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거나 성병검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셋째, 미군이 성병에 걸려 '컨택' 되었을 경우 낙검자수용소에 감금되어 성병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음은 성병관리소(낙검자수용소 조례)³⁾ 조항 중 성병 치료 대상자인 미군 위안부들을 범죄자처럼 취급된 조항도 있다.

제 3조(관장 기능) 이 보건소지소(이하 성병관리소라 칭한다)는 관내 유엔군 주둔지역의 특수업태부들 중 성병보균자를 격리수용하여 완치시킴과 동시에 그들에 대하여 보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수용대상자) ① 성병관리소는 관할구역의 성병진료소에서 검진한 결과 낙검된 다음 성병보균자를 수용격리하여 치료한다.

.....

③ 수용명령을 받은 낙검증 소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경우에는 군수는 경찰서장의 협조하에 수용 치료하여야한다.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군위안부는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그 치료과정에서도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배제되었다. 어떻게 정부가 주도하여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적용시킬 수 있었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김현선, 신영숙(2014),323p

4) 애국교육(교양강좌)

1962년 11월 박정희 정부는 지역재건부녀회에 등록된 미군 위안부 1만 640명을 대상으로 정신, 미용, 위생 간단한 영어 화회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많게는 1달에 한번 또는 필요시에 따라 교양강좌를 공지하고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항상 미군 장교와 군수, 경찰서장, 보건소장, 특수관광협회장, 자매회장 등이 참석하였다고 한다.⁴⁾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은 '미군 위안부들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위안하고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애국자입니다.' 라고 칭송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미군 위안부들에게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마련해야하니 달러를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Ⅲ. 미군 위안부의 삶

1) 미군 위안부 현황

① 거주지역

현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촌으로 경기 동두천시(보산동, 광암동, 창말), 의정부시(고산동, 가능동), 서울시(이태원), 평택시(신장동, 안정리), 경북 칠곡군(왜관), 대구(봉덕동), 전북 군산시(아메리칸타운)이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기지촌의 형태가 사라진 지역으로는 파주시(선유리, 연풍리), 동두천시(상패동), 의정부시(금오동, 용현동), 춘천시(소양동), 대전(장동), 충북(성환) 등이 있다.⁵⁾ 현재 대부분의 미군 위안부들이 현 기지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미군이 철수한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에 남아 생존한 여성들도 상당 수 파악되었다.

② 연령

2014년 새움터 지원 조사에 의하면 60대의 비율이(36.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70(31.4%), 50대(18.6%), 49세 이하(13.7%)의 순이었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 동두천, 평택, 의정부 등의 지역에는 50대 초반에서 60대중반까지의 연령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주한미군들이 철수한 지역에는 평균연령이 68.1세로 현 기지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⁶⁾

4) 김현선(2013),323p

5) 새움터, (2012),새움터의 기지촌여성 지원현황- 1960-80년대 기지촌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새움터 1p

6) 김현선, 고미라(2014), 기지촌여성 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새움터 10p

2014년부터는 새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있는 여성들이 다른 해에 비교하여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군 위안부들이 힘을 모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평택 새움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가 평택 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로 전환되면서 고령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자 새움터에 찾아와 자신의 피해 내용을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고령의 미군 위안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③ 가구 형태

새움터 조사에 의하면 미군 위안부들의 94.2%는 혼자 살고 있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독거 가구 비율이 높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1인 가구 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⁷⁾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지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사례⁸⁾

윤지연씨는(가명, 사망당시 50대 초반)는 10대 중반에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돼 40여 년간 기지촌여성매매의 피해를 겪었다. 기지촌에서 겪은 피해로 인해 윤지연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악화돼 있었고, 심한 우울증과 알콜올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2013년 겨울, 윤지연씨는 집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밤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윤지연씨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이웃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내다보지 않았다. 결국 위급한 상황에서 윤지연씨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다음 날 오전에 발견 될 때까지 방치돼 있었다.

2) 기지촌 성매매 피해

①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자들에 의한 피해

여성들은 기지촌에 유입되어 성매매강요(84.3%)와 화대착취(82.4%), 인신매매(56.9%)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강제낙태, 구타, 감금, 성폭력, 마약투여 등의 피해를 경험하였다.⁹⁾

7) 김현선, 고미라(2014),12p
8) 김현선, 고미라(2014),13p
9) 김현선, 고미라(2014),14p

위 내용만 살펴봐도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들이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겪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군 위안부들은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되었고 피해는 장기간 유지 되었다. 일부 미군 위안부들은 기지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매우 많았다. 사실 현재 생존해 있는 미군 위안부들도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② 국가에 의한 피해

국가에 의한 피해는, 정기적 강제 성병검진(95.1%)과 강제치료(75.5%)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자매회 등록(65.7%), 자매회 회비 강제 납부(63.7%), 낙검자수용소 감금과 강제치료(59.8%), 정부교육(55.9%), 공무원에 의한 연행(30.4%), 공무원 유착비리(12.8%), 수가기관 구금(11.8%)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여성들은 법에 의해 1주일에 1회 이상 성병검진을 받아왔다. 그리고 성병검진 합격 도장은 곧 미군을 상대해도 된다는 허가와 같았다.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음에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성병검진을 하면서도 성병검진 외,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미군 위안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냉만 심해도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포주들은 성병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빗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③ 미군대에 의한 피해

미군대에 의한 피해는 미군 범죄(49.0%)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강제교육(12.8%), 강제치료(4.9%), 구금(3.9%)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기지촌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알려진 사건보다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고 은폐된 사건이 훨씬 많았다. 미군 위안부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정부가 외면한 상태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사건들이 공소시효 문제로 하나, 둘씩 종결되어 가고 있다.

미군 위안부들은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한 한으로 오래된 동료의 죽음을 어제 동료가 사망한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도 설명하고 있다. 부디 미제로 끝난 미군 범죄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떠나 전면 재조사되길 희망하고 있다.

10) 김현선, 고미라(2014),15p
11) 김현선, 고미라(2014),16p

3) 경제적 측면

새움터 조사 결과 미군 위안부들은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으로 조사 되었고 미군 위안부들의 70%이상이 위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70%이상 수입원은 국민기초생활 급여였다.¹²⁾ 이는 대다수 미군 위안부들이 과거에도 현재도 빈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중단 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참여자 삶의 경제적 측면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현재 새움터의 참여자들은 새움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피해를 극복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4) 건강적 측면(정신적 측면 중심으로)

미군 위안부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건강하지 않다가 60.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가 27.5%였다. 즉 88.3%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질병 기간이 가장 긴 질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균 질병기간은 19년 11개월로 나타났다.¹³⁾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증상은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미군 위안부들의 욕구¹⁴⁾

미군 위안부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국가폭력이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 역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서 제도화한 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에 의해, 때로는 성병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수용과 강제치료를 경험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여 지원 받기보다 연령이 많더라도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면서 시설 이용과 지역사회서비스를 의료 및 법률, 일자리제공, 등을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환이나 심각한 질환

등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지촌여성들은 평생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과 낙인에 고통 받았지만, 마지막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맞이하고 싶다고 희망한다.

IV.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미군 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1)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활동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 권력에 맞서 큰 걸음을 내딛었다.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둘째,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셋째, 국가가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지는 오래 되었다. 하지만 소송이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경험을 한 번도 자유롭게 토해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동료들을 지켜보며 더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실을 이야기 할 당사자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역사가 올바르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군 위안부들은 당당하게 ‘원고’로 불리길 희망한다. 2014년 5월 소송을 위해 원고단과 변호인단의 첫 만남이 있었다. 긴 시간동안 토론이 진행 되었다. 당시 한 원고의 말씀이 기억난다.

“변호사님들 참 젊네, 이 말(소장) 다 알겠는가요? 이것(소장) 다 참말이다. 참말, 고생 많이 해 주소.”

12) 김현선, 고미라(2014),17p

13) 김현선, 고미라(2014),28p

14) 새움터, (2012),새움터의 기지촌여성 지원현황 - 1960-80년대 기지촌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새움터 6p

새움터는 소송에 대한 모든 사항을 새움터 원고단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5차 변론 기일까지 모든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 어두운 눈으로 소장, 준비서면 등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어떤 원고는 “내, 죽기 전까지는 끝나것제”라고 힘든 내색을 하기도 하지만 원고단 회의의 회 차가 거듭될수록 원고들의 의지는 강해지고 있다.

원고들은 고령으로 장거리 이동이 힘들지만 법정에 참여하는 것도 원고들의 역할이고 변호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변론기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 단체는 변론기일마다 원고들이 법정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귀가하는 것이 큰 목표이다.

미군 위안부들은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미군 위안부들의 관리 정책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향후, 미국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미군 위안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보호가 절실하다.

2) 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활동

새움터 미군 위안부들은 2008년부터 적극적인 증언활동을 시작하여 토론회, 자료집 등을 발간하였고 2013년에는 ‘미군 위안부 최초 증언록 미군 위안부 숨겨진 진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폭력에 대한 증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미군 위안부제도 자료 발굴

새움터 미군 위안부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민간단체로써 자료 수집을 해왔고 많은 부분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증거 자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군 위안부들은 증언과 발굴한 자료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사실 동일한 시대를 겪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관련 자료를 찾고 분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움터 활동가들이 몇 년 동안 자료를 발굴하였음에도 미군 위안부들은 아직 찾지 못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곤 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진실을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미군 위안부들이 수차례 요구한 것처럼 정부에 보관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 이러한 투명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2. 입법 활동

1) 현행 제도 점검¹⁵⁾

① 범죄 방지 및 관련자 처벌의 측면에서 첫째, 현행 법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하에서도 ‘미군 위안부’ 범죄에 가담한 관련 공무원과 알선자 및 성매매에 가담한 미군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범죄가 공소시효의 제한으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둘째, 국가의 범죄에 대한 방지 및 조사 규정이 없다. 셋째, 군대 성매매의 경우, 타 성매매와 구별해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해당규정 없다. 적어도 미군의 관련규정과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미국군사법전의 처벌조항 중 미군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 (1) 성매매: 불명예 제대, 모든 임금과 수당 몰수, 1년형 (2) 성매매 알선: 불명예 제대, 모든 임금과 수당 몰수, 5년형)

‘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안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피해기간이 매우 길고 고령인 점, 국가주도하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점,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특수성 고려하여 현재의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하거나 군대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함께 모색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15) 2013, 새움터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제안서(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V. 마치며

지금까지 숨겨왔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역사를 올바르게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미군 위안부들만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진심어린 관심과 지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 위안부제도로 인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고통을 줄여 당당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새움터, 2012『새움터의 기지촌여성 지원현황- 1960-80년대 기지촌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을 중심으로』새움터
- 김현선, 2013『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얼아카데미』
- 새움터, 2013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제안서(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 김현선, 신영숙, 2014 『미군 위안부 역사 자료집』, 새움터
- 김현선, 고미라, 2014『기지촌여성 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새움터

투론문 2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김정애 (기지촌 인권연대 공동대표)

1. 명칭(정의)의 문제 : 위안부(일본, 미군, 한국군, 유엔군), 기지촌 여성 등의 명칭 통일 필요.

2. 한국군 위안부의 역사 : 일본군(본국, 만주국) 출신의 친일파 한국군 지휘관(예: 육사 1-5기 중심의 창군 주역들)에 의한 한국군 초기 창군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됨. 일본군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베낀 결과.

3. 미군정기 이후 일제시대 기지의 미군의 공창지역화 – 동의

4. 여성운동과 소송의 의미

- ‘공모자,’ 표현에 동의.
-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주장하는 ‘악의 평범성’ 문제(예: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태)
- 내 안의 차별주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계기.
- 그동안 무시/차별/폐기되어 왔던 여성의 목소리, 경험 등이 역사로 기록되어 전승될 필요성.
-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표준화 경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의 특수성과 다양성 존중하는 형태.
- “‘페미니즘’인지 ‘팻병주의’인지....” ‘오만한 계몽주의’에 대한 경계심.
- ‘국가에 책임을 묻는다’의 의미/논리 정립 문제.
-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개인주의, 탈민족주의 담론의 문제.
- 식민주의, 가부장제, 남성우월주의의 문제.

- 역사의 피해자로 낙인 찍는 문제
- 소송 과정에서 개인별 경험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
- 여론화 문제(알리기/설득하기/이해 시키기).
- “누군가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침묵은 거짓말이다”(엠투센코)

부록
보도자료

보도자료 1

새움터 : 보도자료
발신일자 : 2009년 12월 9일
수신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발신처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내용 : 미국 국무부 내 국제여성문제 대사인 멜란 버비어 대사와 간담회 내용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12-49번지 2층
 전화: 031-867-4655 FAX: 031-859-4655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새움터는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고 국내외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첫째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둘째, 군사주의와 군대성매매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지촌 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미국 국무부 내 국제여성문제 대사인 멜란 버비어 대사(Ambassador-at Large for Global Women's Issues)가 한국을 방문하여, 12월 9일 여성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새움터도 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미국정부와 미군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고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정부와 미군부대에 의한 기지촌통제와 기지촌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서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4. 기지촌의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세월을 묻히기 전에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들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향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지촌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자위원회' 결성되었고 그 첫 사업으로 기지촌에서의 경험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증언을 모아 새움터와 '기지촌문제 해결을 위한 생존자위원회'는 증언 자료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기지촌 관리 실태를 본격적으로 고발하는 우리사회의 첫 번째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두 번째 증언자

료집을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들의 공동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들의 활동과 요구내용이 국내외 사회에 알려져 한미양국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 보도협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5.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당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경험했던 여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인신매매되어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수십년간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의 삶에 가난과 질병을 남겼습니다.

동료들이 질병과 자살, 범죄 등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이 겪었던 고통의 이유를 밝히고, 정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기지촌의 군대성매매에 직접 개입하여 기지촌여성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억압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주한미군당국은 '미군의 건강과 안락함'을 위해, 직접 기지촌성매매에 개입했고, 기지촌여성들의 몸과 자유를 억압했으며, 함부로 우리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범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이고, 그 고통은 명백하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들은 미군을 상대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지촌여성이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료들을 공개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은 우리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넷째, 다시는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신의 노력과 연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국 기지촌성매매 생존여성 73명

보도자료 2

발신일자 : 2014년 6월 24일

수신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 요청 건

1. 2014년 6월 25일 오후 13시(장소:한국여성플라자 4층)에 한국 내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미군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을 위해, 또는 외화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존재였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해 기지촌이 형성, 관리되고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주의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까지도 군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군대를 둘러싼 지역의 군대화, 또는 그러한 군대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까지도 필요악으로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 내에는 국가나 군대에 의해 운영된 다양한 위안부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제도화된 위안부제도가 해방이후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경험한 군대와 군사정권에 의해 '한국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및 해방직후의 '한국군 위안부'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위안부 제도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외의 다른 위안부제도는 역사적 규명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4.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원고 120여명은 1957년부터 대한민국 내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입니다. 피해 원고들은 수십년간 '미군 위안부'로 살아오며,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도 희미해져 다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스스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위해 '특정지역' 설치,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 허용, 등록, 정부의 애국교육, 낙검자 수용소 설치 등 미군 위안부제도를 마련,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 원고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한 범죄를 묵인하고 가담함으로써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 침해를 극단화시켰습니다.

5.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첫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둘째,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셋째, 국가가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원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2014년 6월 25일 13시

※장소: 한국여성플라자 4층 아트칼리지

※주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진행순서

- 사회 : 신영숙 (새움터 대표)

- 소송취지 및 경과보고: 김진 변호사(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

- 소송에 대한 원고 발언

- 소송에 대한 단체 입장 발언

발언: 안김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발언: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발언:

- 성명서 낭독: 원고

- 질의응답

※원고들의 비밀보장으로 인하여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며 사진촬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행사 순서 및 발언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기자회견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미라 새움터사무국장(010-5377-7185),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3

발신일자 : 2015년 1월 28일

수신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변론기일 기자회견 및 보도 요청 건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지난 12월 기지촌에서 원고 한 분이 별세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기지촌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미군 위안부로서 각종 질병, 가난, 편견 등과 싸우다 소송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고 000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3 2015년 1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로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본 소송의 원고들을 지지하는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소송의 쟁점을 알리고 공의로운 재판과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 지난 2014년 12월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정부 측 변호사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강제성병검진’ 등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인권침해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소송의 원고들 121명은 스스로 ‘위안부’로 불리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소송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법령과 수많은 공문서에서 원고들을 지칭하여 사용한 명칭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해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자치사무란 있을 수 없었으며, 설령 형식적으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사무에 해당하였습니다.

(1) 피고의 '위안부' 용어 사용의 증거

피고는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여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였고, 이 후 서울, 강릉, 춘천, 원주, 속초 등 각지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설치한 위안소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인 1954년 경 모두 폐쇄되었지만, 이후 국내에 잔류하게 된 미군들을 위하여 위안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1957. 7. 1.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이 회합하여 '유엔군 출입 지정接客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이 일정지역으로의 집결문제'에 합의하고, 보건사회부는 위안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57. 2. 28.부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1957. 2. 28. 제정된 이후에 1969. 11. 17. 개정되었으나 1969. 11. 17.자 개정된 시행령에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적어도 위 시행령이 재개정된 1977. 7. 1.까지는 법령의 차원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가지 구체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소 및接客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보건방역국 예규 제1726호, 1951. 10.)

(1) 위안부라 함은 위안소에서 외국을 상대로 위안接客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로, 유부(有夫)의 부(婦)로써 할 수 없고, (2) 이 영업은 유엔군이 주둔한 지구로 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고, (3) 전시에 한하여 특수사정에 의거한 임시조치임으로 이용자는 외국병에 한하고 한인의 출입은 절대 허용하지 말고, (4) 6·25동란을 계기로 전쟁수행에 수반된 특수영업태이며 의법적 공무사업이라는 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급할 것

피고는 명시적으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위안소에서 외국을 상대로 위안接客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업태가 의법적인 공무사업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나) 경기도지사의「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1961. 9. 14.)

2. 현황
마. 본 영업소는 동 지구에 유동하는 위안부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유엔군을 상대케 하고 영업부책임하에 건강진단과 성병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중략)
4. 문제에 관련 사실
가. 현재 관하 각 유엔군 주둔지역에 유동하고 있는 위안부수는 약 10,000명으로 추산되며 사창단속강화시책에 따라 증가 경향에 있음. 성병감염방지 및 풍기 유지면과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양양면을 고려하여 위안부들의 집단수용시설이 시급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중략)
5. 토의
라.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며 외화획득과 국가예산 절약면에 기여할 수 있음 차.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되므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부록 3. 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세부기준〉
2. 영업소수의 제한 및 시설향상
가. 부록2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엔군 이동 및 위안부 유동상황에 따라 전기 기준에 의건 지역 및 업소수를 조절한다.

(2) 지방자치법의 효력 정지 - 자치사무 부존재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1961. 9. 1. 법률 제707호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위 법은 1988. 5. 1. 폐지되기까지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였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즉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군수 및 도지사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적어도 1961. 5. 16. 부터 1988. 5. 1.까지는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강제적 성병검진

1972. 10.경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기지촌정화대책 내용을 보면, 전국 각 계엄사무소 등을 통해 기지촌 주변 마약사범 및 성병 일소를 계획하고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중앙부처가 나서서 위 기지촌 정화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상당한 금액의 성병 관리 예산안이 편성되어 성병 관리가 시행되고, 보건소 내 성병진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병관리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 기지촌지역 성병진료소 인력증원, 성병치료 중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사고처리와 관련한 기관간 협조요청 등 국가 조직간에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지촌 위안부의 성병이 관리, 치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첫째,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게 성매매를 권유, 조장하였음을 밝히고, 둘째, 피고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원고들의 인권을 짓밟았음을 인정하며, 셋째, 정부가 숨겨왔던 미군 위안부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7. 기자회견 당일 위 내용과 관련한 정부문서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기자회견

- 시간 : 2015년 1월 30일 (금) 오후 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 길)
- 주최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한국여성단체연합

※당일 현장에서 관련자료를 배포합니다. ※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4

발신일자 : 2015년 5월 28일

수신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및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보도 요청 건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5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560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같은 날,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신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지난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한국 정부가 해방 이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촌 지역에 여성인권 유린의 장을 형성·관리·유지하였던 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이 만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2015년 1월 29일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4. 현재 피고 정부는 원고가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관련한 국가 위법성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원고들의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1월 30일 두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부에게 2월 말까지 답변서를 다시 제출 해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정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말고 당시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고 국가 이익만을 위해 미군 위안부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였던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고 더 이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들은 국가 책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피고 정부의 공식적인 '미군 위안시설 설치 및 미군 위안부' 용어 사용

피고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여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하여 관리하였고, 이 후 서울, 강릉, 춘천, 원주, 속초 등 각지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설치한 위안소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인 1954년 경 모두 폐쇄되었지만, 이후 국내에 잔류하게 된 미군들을 위하여 위안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1957. 7. 1.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이 회합하여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이 일정지역으로의 집결문제'에 합의하고, 보건사회부는 위안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57. 2. 28.부터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1957. 2. 28. 제정된 이후에 1969. 11. 17. 개정되었으나 1969. 11. 17.자 개정된 시행령에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적어도 위 시행령이 재개정된 1977. 7. 1.까지는 법령의 차원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기지촌 특정지역 '미군 위안 성매매 허용' 및 관리

원고들은 '헌법, 각종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구윤락행위등방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기지촌을 형성, 관리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및 애국교육 등을 통해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

매를 권유, 조장하였으며, 미군 및 포주에 의한 범죄 묵인, 성병감염 위안부 단속, 페니실린 강제 투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하여 그 용역 대가로 취득한 부정외래품의 합법적인 처리 방안까지 정부가 계획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애국교육’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공인하고 보호하였던 소위 기지촌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의 애국 교육 등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3) 기지촌 특정지역의 정부 관리정책 - 자치사무 부존재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1961. 9. 1. 법률 제707호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위 법은 1988. 5. 1. 폐지되기까지 지방자치법에 우선하였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즉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군수 및 도지사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적어도 1961. 5. 16. 부터 1988. 5. 1.까지는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72. 10.경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기지촌정화대책 내용을 보면, 전국 각 계엄사무소 등을 통해 기지촌 주변 마약사범 및 성병 일소를 계획하고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등 중앙부처가 나서서 위 기지촌 정화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상당한 금액의 성병 관리 예산안이 편성되어 성병 관리가 시행되고, 보건소 내 성병진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병관리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 기지촌지역 성병진료소 인력증원, 성병치료 중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사고 처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요청 등 국가 조직 간에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지촌 위안부의 성병이 관리, 치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의 미도래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 권리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애국교육’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

히려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인하고 보호하였던 소위 기지촌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의 애국 교육 등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사적 주체들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고 행위 해야 하고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불법을 권유, 조장하여 심지어 애국행위로 적극 합리화한 사안에서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니다.

6.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의 ‘미군 위안부’제도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 원고들은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미친선회, 보건소 성병관리소, 특수관광협회 등 자료를 관련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국가의 주도로 숨겨 왔던 역사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알려 질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변론 및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 일정 : 2015년 5월 29일 (금) 오전 11시~17시
- 변론시간: 2015년 5월 29일 (금) 오후 14시 제 560호 법정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 길)
- 주최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5

발신일자 : 2015년 7월 23일

수신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네 번째 변론 및 1인 시위
보도 요청 건**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5년 7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560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지난 2014년 6월 25일 전국 각 기지촌에서 생존해 있는 122명의 '미군 위안부'들이 첫째,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둘째,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며, 셋째, 국가가 한국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그 동안 겪은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벌써 1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첫째, 대한민국이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전쟁 시에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위해 '한국군 위안부' 와 '유엔 위안부'를 동원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주둔한 미군 병사들을 위해 '미군 위안부'를 동원하여 정부가 직접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던 역사적 진실을 알려냈고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둘째,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역사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었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군 위안부'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각종 방법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해 공감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이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나 지원법 개정 등으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 2014년 5월 25일 '미군 위안부'형성과 관리가 국가 '미군위안부'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이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첫 번째 변론기일: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촌을 형성하고 관리과정에서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손해를 입혔고 업주들의 불법행위 대해서도 국가가 권유, 조장, 방조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요지를 설명하고 손해배상 할 의무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단은 위안부용어문제제기와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관리(강제 성병 검진, 감금치료)는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였고 국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장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두 번째 변론기일: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피고 답변서 누락을 지적하고 위안소 및 위안부 사용, 기지촌 형성 및 관리, 포주들의 불법행위 묵인 등 위법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입증하였고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 남용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 대리인단은 불법행위 인정할 수 없고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소송에서 주장한 부적절한 '위안부' 사용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 누락을 지적하고 2월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2월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년 6월 12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피고 대한민국에 강제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준비서면을 외면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 입증자료 추가 제출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정리한바,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미군 위안부' 등록시키고 강제 성병 검진과 정부 애국 교육, 그리고 한미친선회를 통해 관리하고 포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미군 위안부'들에게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클럽 업주들에게 면세주류와 보조금까지 집행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가 책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미군 위안부'들에게 행하였던 위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시효까지 남용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의 원고들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끝)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네 번째 변론 및 1인시위

- 시간 : 12시~15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 길)
 - 변론시간 : 2015년 7월 24일 (금) 오후 14시 제 560호 법정 - 주최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6

발신일자 : 2015년 9월 10일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 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 보도 건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66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자주와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의 바람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꿈꾸던 조국의 평화는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로서 전쟁 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국민의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주한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미군주둔은 정권유지에도 상당부분 이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4.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기지촌 지역에 민간업자들이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주들의 클럽 설치, 운영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의 등록, 성병관리 등 직·간접적으로 기지촌을 관리하면서 기지촌에서 발생한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포주들의 횡포, 미군 범죄 등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협을 무릅쓰고 기지촌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던 미군 위안부의 절규를 여성 개인의 부끄럽거나 안쓰러운 경험정도로 치부하여 미군위안부의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군 위안부들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통해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5.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 기일에서는 오랫동안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증언 해 오셨던 김연자님이 원고와 같은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정부의 관리 정책에 직접 동원되었던 증인으로써 정부가 자행하였던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 유린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6. 앞으로 법정에서는 관련자 증언과 원고 증언 등을 통해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평화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부끄러운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기록될 것입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현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군위안부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 전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소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고령의 원고들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끝)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다섯 번째 변론

- 변론시간 : 2015년 9월 11일 (금) 오후 14시 제 466호 법정 - 주최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